

2024년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선정 계획(안)

(석면환경안전부, '24.1.)

□ 추진목적

- 법적규모 미만으로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민감·취약 계층 이용시설 및 문화·체육시설* 등 석면조사 지원대상을 다각화 하여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

*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

□ 추진개요

- (사업명) 석면안전진단사업
- (사업기간) ~ '24. 12. 31.
- (사업대상)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·체육시설 400개소*

시 설	사회복지시설(350개소)	문화·체육시설(50개소)
대 상	아동, 청소년, 노인시설	체육도장, 골프연습장, 체력단련장, 당구장, 탁구장, 볼링장, 에어로빅장, 실내낚시터, 테니스장, 공연장, 영화상영관, 야외음악당, 박물관, 미술관, 화랑, 도서관, 문화의 집, 문화체육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지방문화원, 국악원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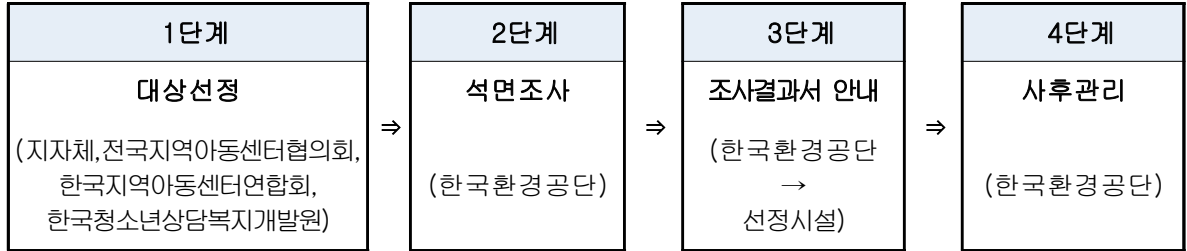
*지역아동센터 포함 법 개정 추진 예정('24.6)에 따라 신청대상 시설이 많을 경우 아동시설 우선 실시

- (사업내용) 석면안전진단사업 무료 실시
 - 석면조사 및 분석(석면함유 의심자재 시료 채취 및 분석, 석면조사결과서 작성)
 - 석면안전관리 컨설팅(석면안전관리 가이드북 제공 및 석면건축자재 유지·관리, 해체·제거 방법 교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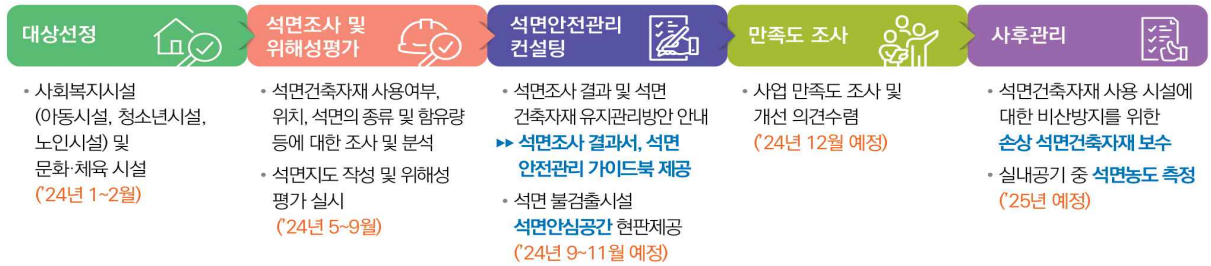
※ 무석면 시설에 대해 석면안심공간 현판제공

- 석면검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(위해성평가등급 중간 이상, 시설 손상된 석면 건축자재 보수공사 및 공기질 측정)

○ (사업추진절차)



○ (사업 세부 수행절차)



□ 대상선정 기준 및 방법

○ (대상)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·체육시설 400개소*

* 사회복지시설 350개소, 문화·체육시설 50개소(상황에 따라 대상시설 및 시설수는 변동가능)

○ (선정기준)

- 석면 잠복기를 고려하여 저연령자 이용시설(아동시설) 우선 선정
- 문화·체육시설, 청소년시설, 노인시설 및 노후건축물

<선정 조건>

- ① 민감, 취약계층 (아동시설) 우선 선정
- ② 문화·체육시설
- ③ 석면안전관리법 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 대상 시설(시설면적 500m² 미만)
- ④ 착공일 '09.1.1일 이전

○ (대상선정방법) 관계기관 및 지자체 모집·추천 후 선정기준 우선순위 적용

- (지역아동센터)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모집
- (청소년쉼터)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모집
- (아동시설, 청소년시설, 노인시설, 문화·체육시설) 지자체 모집

※ 원활한 대상 모집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, 모집 대상 부족시 환경부 협조요청(공문발송, 환경부→보건복지부, 문화·체육관광부)

○ (추진일정)

- 공모 및 접수 : 공고일 ~ '24.2.23(금)
- 대상선정 결과 통보 : '24.2.29.(목), (모집기관→공단)
- 최종선정결과 통보 : '24.3.8.(금) (공단→모집기관)

□ 사업 추진일정

과업수행내용	추진일정		'24년도											
			1분기			2분기			3분기			4분기		
	1	2	3	4	5	6	7	8	9	10	11	12		
사업대상 선정														
석면조사 수행업체 선정														
석면조사 및 분석, 결과서 작성														
결과서 통보 및 컨설팅 석면안심공간 현판 제공														
고객만족도 조사														

※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사후관리(보수공사,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)는 '24년 석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'25년 시행 예정

참고 1

체육시설의 종류(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)

구분	체육시설의 종류
<p>운동 종목</p>	<p>골프장, 골프연습장, 궁도장, 게이트볼장, 농구장, 당구장, 라켓볼장, 럭비 풋볼장, 롤러스케이트장, 배구장, 배드민턴장, 벨로드롬, 볼링장, 봅슬레이장, 빙상장, 사격장, 세팍타크로장, 수상스키장, 수영장, 무도학원, 무도장, 스쿼시장, 스키장, 승마장, 썰매장, 씨름장, 아이스하키장, 야구장, 양궁장, 역도장, 에어로빅장, 요트장, 육상장, 자동차경주장, 조정장, 체력단련장, 체육도장, 체조장, 축구장, 카누장, 탁구장, 테니스장, 펜싱장, 하키장, 핸드볼장, 인공암벽장, 그 밖 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</p>
<p>시설 형태</p>	<p>운동장, 체육관, 종합 체육시설, 가상체험 체육시설</p>

1. 공연시설

- 가. 공연장: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(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)
 - 1) 종합공연장: 시·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
 - 2) 일반공연장: 시·군·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
 - 3) 소공연장: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
- 나. 영화상영관: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
 - 1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
 - 2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
- 다. 야외음악당 등: 연주·연극·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

2. 전시시설

- 가. 박물관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
- 나. 미술관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
- 다. 화랑: 회화·서예·사진·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·매매하는 시설
- 라. 조각공원: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

3. 도서시설

- 가. 도서관: 「도서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
- 나. 작은도서관: 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

4. 지역문화활동시설

- 가. 문화의 집: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
- 나. 삭제 <2019. 4. 16.>
- 다. 문화체육센터: 지역주민의 문화·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
- 라. 청소년활동시설: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

5. 문화 보급·전수시설

- 가. 지방문화원: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
- 나. 국악원: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
- 다. 전수회관: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·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

6. 종합시설: 제1호가목,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

7. 삭제 <2019. 4. 16.>